부산광역시동래구공고 제2026-1292호

- 평생교육사, 아동보호전담요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부산광역시 동래구에서 근무할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하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11월 2일

부산광역시동래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근거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 3, 4(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근무기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71호)

2.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 직급	선발 인원	채용 기간	담 당 업 무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과)	**지방행정서기보 (일반임기제9급)**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평생학습관 운영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기획·운영 - 미래·진로교육 및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 추진 - 평생학습계좌제 등 평생학습 관련 제도 운영 - 평생학습 매니저 운영 및 지역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 - 평생학습 박람회·성과 공유회 등 성과 확산 - 그 밖의 평생학습 관련 사업 추진 등
아동보호 전담요원 (아동청소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주 35시간)**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초기상담·가정환경조사 및 보호조치 - 보호대상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 수립 및 양육상황 점검 - 보호대상아동의 원가정복귀 및 자립 지원 -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및 아동보호 관련 기타 협력 업무 등

※ 직무내용 공통사항 : 해당 부서(계) 주요현안 및 부서장(계장)이 분장 또는 지시하는 업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응시자격

□ 응시자격(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 받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채용분야 자격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임용분야	채용 자격기준
평생교육사	○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평생교육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서 수행한 평생교육 관련 업무경력 【우대조건】 ·지방자치단체 또는 평생학습도시 관련 실무경력자 우대
아동보호 전담요원	○ 다음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업무와 관련성이 증명되는 경력 【우대조건】 ·사회복지분야 근무경력 중 아동복지분야(아동사례관리가 가능한 입양, 미혼부모,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복지분야) 경력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최종경력 기준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임기제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를 명시한 경우에 한함.

※ 공무원 퇴직연금 등 연금 수급자가 본 시험에 임용된 경우에 그 재직기간 동안 해당 연금 지급이 전부 또는 일부 정지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본인이 사전에 철저히 확인 후 지원

4. 보수 및 근로조건

□ 보수기준

채용분야	채용등급	연봉액	비 고
평생교육사	일반임기제9급 (주40시간)	30,073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및 동 규정 [별표1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 한계액 상한액의 55%
아동보호 전담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주35시간)	28,706천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5조제3항 및 동 규정 [별표13]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연봉 한계액 상한액에 업무난이도 및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54,678천원 × 60% × 35/40시간)

※ 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 **1차 서류전형:** 구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 단, 재공고에도 적거나 같을 경우 응시인원에 대한 적격심사로 채용 가능

□ **2차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추후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따라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하되 '중'의 개수도 동일한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 합격자로 결정함.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최종합격자 발표 및 통지: 구 홈페이지 공고

○ 「지방공무원법」 제43조의3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의2에 따라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시험에 개입하거나 채용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된 피해자를 추가로 합격시키거나 시험의 응시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면접결과 공개**: 면접자가 요청한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중·하의 개수 공개 (단, 평가요소별 상·중·하는 비공개 대상)

6. 시험일정 및 제출서류

□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서류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2026.11.16.~11.18.(3일간)	2026.11.24. 예정	추후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 **면접시험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고**하며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원서교부: 부산광역시동래구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 게시(내려 받아 사용)

○ 접수기간: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접수,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우편접수자는 우편발송 후 전화 요망

○ 접 수 처: 동래구 총무과

- 우편접수일 경우 접수마감일 근무시간(18:00)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 47808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93(복천동) 동래구청 총무과 임기제담당자]
- 우편 접수 시는 우체국 통상환증서(응시수수료)와 「반신용 봉투」를 함께 우송,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등기용 우표 부착' 및 수신인 주소·성명 기재

□ 제출서류 *스테이플러 사용 없이 다음 순서대로 제출

○ 공통사항(필수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② 응시원서 1부

③ 이력서 1부

④ 자기소개서 1부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⑥ 최종학교 졸업(학위)증명서 1부

⑦ 경력 증빙서류(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⑧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c.or.kr) 1부

⑩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⑪ 개인정보제공 및 교유식별정보처리 동의서 1부

⑫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ㅇ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불명확할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최종시험(면접)일 기준 ㅇ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경력사실확인증명서’ 추가 제출<별지 제8호 서식> ㅇ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경력사실확인증명서 1부

7.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함.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발생,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제출한 원본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청구 할 수 있음.

※ 단,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에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시행합니다.

※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제출 서류로 갈음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분야는 전원 불합격 처리하거나 예정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비위면직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임용시험령」등 임용 및 채용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에 문의

- 직무관련 문의 : 동래구청 평생교육과(☎ 051-550-4464)
 동래구청 아동청소년과(☎ 051-550-4862)
- 그 외 채용절차 관련 문의: 동래구 총무과(☎ 051-550-4105/4104)